



: 2017-02-15

대 법 원

제 3 부

판 결

사 건 2016두5196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원고, 피상고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
피고, 상고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. 9. 1. 선고 2016누34730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16. 12. 29.



.
.
: 2017-02-15

재판장 대법관 박병대

 대법관 박보영

주 심 대법관 권순일

 대법관 김재형